

|   |   |   |
|---|---|---|
| <p>꿈을 키우고<br/>행복을 가꾸는 냉정교육<br/>냉정 2016-182호</p> | <br><b>냉정안내장</b> | <p>◆궁금하시면 문의 하세요◆<br/>담당자 교사 윤 경 희<br/>전화번호 070-7097-2111</p> |
|---|---|---|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안내 ▣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원인과 결과 등에 관한 자료와 아동학대 관련법과 처벌,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신고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아동학대’란 무엇을 말하나요? ‘아동학대’가 범죄인가요?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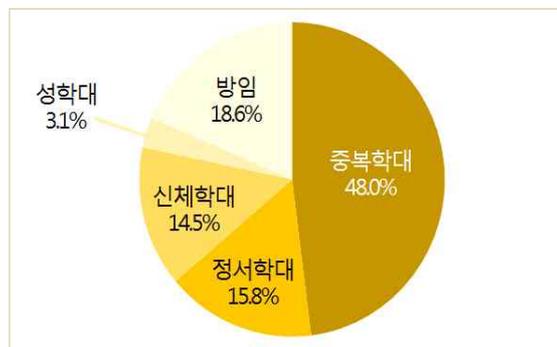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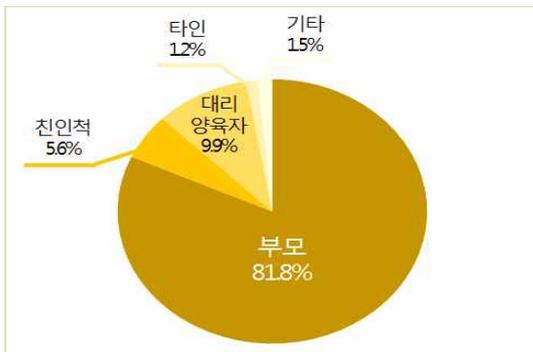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항)**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이며, 학대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뒷면에도 내용이 이어집니다.

## ☺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이유와 학대의 결과는?

| 구분  | 요인  | 결과   |
|---|---|--|
| <br>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 √ 학대로 인한 사망.<br>√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줌.<br>√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br>√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
| <br>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 다른 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br>√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br>√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br>√ 가출 |
| <br>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br>√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br>√ 약물 남용 및 중독<br>√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

## ☺ 아동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
|---|--|
| <b>신체학대</b><br>·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br>·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b>아동복지법상</b>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r><b>처벌</b><br><b>형법상</b>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
| <b>성학대</b><br>·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br>·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b>아동복지법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li> <li>·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li> </ul> <b>처벌</b><br><b>형법상</b>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

## ☺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
|---|
| <b>유의사항</b><br>·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함.<br>·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br>·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br>·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
|---|

- √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 √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3항)

※ 전체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2016. 09. 20.

냉 정 초 등 학 교 장